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6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안철수 · 김상훈
박덕흠 · 김태호 · 윤한홍
이종배 · 박충권 · 박성민
이종욱 · 권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,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의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

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5항).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”를 “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내진성능 보강 권고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 평가가 포함된 <u>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</u> 내진성능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12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<u>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</u>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<u>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